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진선미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호 3050

발의연월일: 2024. 8. 21.

발 의 자:진선미・이학영・임오경

최기상 · 김문수 · 이기헌

이광희 · 조승래 · 강경숙

정준호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교사가 미성년자인 학생에 대해 친밀감을 기반으로 성폭력을 가하거나 그 사실을 은폐하는 '그루밍 성범죄'가 교내에서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그런데 교내에서 발생한 성희롱의 경우 여성가족부장관에게만 그 사실을 통보하도록 정하고 있고, 교육부장관을 통보 대상에 포함하고 있지 않아. 성범죄 예방에 실효성이 높지 않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유치원의 장, 어린이집의 원장,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대학교의 장으로 하여금 성희롱 사건이 발생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사실을 여성가족부장관뿐만 아니라 교육부장관에게도 통보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1조의2).

법률 제 호

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양성평등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또는"을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유아교육법」 제7조에 따른 유치원, 「영유아보육법」 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각급 학교,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그 밖에"로 한다.

제31조의2제1항 중 "사실을 여성가족부장관에게"를 "사실을 다음 각호에 따라"로 하고, 같은 항에 각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1. 「유아교육법」 제7조에 따른 유치원의 장, 「영유아보육법」 제 10조에 따른 어린이집의 원장,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각급 학교의 장 및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장: 여성 가족부장관 및 교육부장관
- 2. 국가기관등의 장(제1호에 해당하는 기관의 장은 제외한다): 여성 가족부장관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혅 행 개 정 아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제3조(정의)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현행과 같음) 1. (생 략) 2. "성희롱"이란 업무, 고용, 그 2. -----밖의 관계에서 국가기관ㆍ지 -----국가기관 및 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으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유아 로 정하는 공공단체(이하 "국 | 교육법ᅟ 제7조에 따른 유치 원, 「영유아보육법」 제10조 가기관등"이라 한다)의 종사 자,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다 에 따른 어린이집, 「초・중 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 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각 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를 말 급 학교. 「고등교육법」 제2 조에 따른 학교, 그 밖에---. 하다. 가. • 나. (생 략) 가.・나. (현행과 같음)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제31조의2(성희롱 사건 발생 시 제31조의2(성희롱 사건 발생 시 조치) ① 국가기관등의 장은 조치) ① -----해당 기관에서 성희롱 사건이 발생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국가기관등의 장이 해당 성희 롱 사건의 행위자인 경우를 포 함한다) 피해자의 명시적인 반 대의견이 없으면 지체 없이 그 사실을 다음 각 호에 따라-사실을 여성가족부장관에게 통ㅣ

보하고, 해당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제31조제1항에 따른 재발방지대책을 여성가족 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 설>

②·③ (생 략)

- 1. 「유아교육법」 제7조에 따른 유치원의 장, 「영유아보육법」 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의 원장,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각급 학교의 장 및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장: 여성가족부장관 및 교육부장관
- 2. 국가기관등의 장(제1호에 해 당하는 기관의 장은 제외한 다): 여성가족부장관
- ②·③ (현행과 같음)